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75
----------	-------

발의연월일 : 2026. 7. 1.

발 의 자 : 김용태 · 조은희 · 김성원  
서천호 · 김대식 · 이성권  
박충권 · 임종득 · 고동진  
한기호 · 안철수 · 배준영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장기요양사업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이 국가 돌봄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의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가정 등 폐쇄적 환경이나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하며 작업 중 사고, 근골격계 질환과 같이 중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산업재해 인정 또는 임금체불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 시 장기요양요원 개인이 고액의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2항제1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2항제1호 중 “지원”을 “지원(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등 법률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등 법률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법률 상담에 관한 지원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권리 침해 행위로 인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4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소송비용에 관한 지원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권리 침해 행위로 인하여 소송이 개시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생략)</p> <p>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u>지원</u></p> <p>2. ~ 4. (생략)</p> <p>③ (생략)</p>	<p>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u>지원(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등 법률 지원을 포함한다)</u></p> <p>2.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